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3가단510722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4. 12. 10.

판결 선고2015. 1.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2,947,292원과 그 중 91,629,0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6,993,026원과 그 중 45,863,748원에
대하여,

각 2013. 5. 13.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3. 5. 16.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762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09. 3. 6. 보증금액 50,000,000원인, ② 2011. 4. 6. 보증금액 45,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피고 A는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3. 10.에 50,000,000원, 2011. 4. 7.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피고 A에게 2013. 1. 14.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3. 5. 13. 중소기업은행에 91,629,014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 (4)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275,67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1,042,608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3. 5.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위변제금,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92,947,29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1,629,014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46,993,02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5,863,74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3. 5. 1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3. 10.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A가 2013. 5. 16. 피고 C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6244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채권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와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화성시 D 임야 4,639㎡, E 공장용지 4,644㎡, F 임야 414㎡, G 도로 45㎡, H 도로 264㎡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위 각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이 합계 3,072,874,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오규희

별지